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8. 29 평창군수(재무과)
- 나. 회부일자 : 1998. 9. 15.
-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가.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가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 나.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18.15평)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1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경감범위를 확대함.(안제13조제2호)
- 나.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함.(신설 안 제24 조의 2)

4. 검토의견

-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군세를 감면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적정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15평) 이하인 경우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1평)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임.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